

## 고

## 시

## 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014호

##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(남양주양정역세권 S-1BL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S-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남양주양정역세권 S-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(통합공공임대)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

3. 사업개요

○ 대 지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일원

(남양주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S-1BL)

○ 사 업 면 적 : 55,547.00㎡

○ 대 지 면 적 : 55,547.00㎡

○ 연 면 적 : 150,834.94㎡

○ 사 업 규 모 : 아파트 9개동(통합공공임대 1,475세대, 지하3층~지상25층) 및 부대복리시설

○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(지하주차장 :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)

4. 사 업 비 : 513,527,481천원 (주택도시기금 123,006,876천원)

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고시일 ~ 2031. 07
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,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(1600-1004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